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74

발의연월일: 2021. 2. 17.

발 의 자:권영세·강대식·강훈식

김성원・김용판・김 웅

김은혜 · 김태호 · 박대수

박성민·박성중·박 진

배현진 • 백종헌 • 서범수

서영교 · 서일준 · 성일종

신원식 • 양기대 • 오영화

유경준 • 윤희숙 • 이명수

이양수 • 이 영 • 이태규

정찬민 • 정희용 • 조해진

지성호 · 최연숙 · 최춘식

추경호 • 태영호 • 하영제

한무경 · 허은아 · 황보승희

의원(3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할 때만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에 서민생활안정 보장을 위

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함에도 동법이나 관련 타법에 해당 조항이 없거나 미비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발생으로 조세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조례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 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	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	
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	
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	
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	
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u>인정될 때</u>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